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정 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」('25.2.6.) 시달

1. '24.12.19.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'고정성'이 배제되는 등 새로운 법리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내용, 구체적 판단기준, 새로운 법리의 시적 효력 및 사례별 Q&A 등을 담은 개정 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.
3. 각 지방관서에서는 동 개정 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」을 활용하여 이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의 노사가 통상임금 기준과 새로운 법리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임금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컨설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임금 지급 조건과 관련한 취업 규칙 등 변경 과정에서의 법정절차 준수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('25.2.6.)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본부 각 과, 고용노동청(지청), 고객상담센터, 노동위원회

주무관

이도경

행정사무관

이찬웅

근로기준정책과 전결 2025. 2. 7.

장

박중환

협조자

시행 근로기준정책과-445

(2025. 2. 7.)

접수 근로개선지도과-538

(2025. 2. 10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548

팩스번호 044-202-8071

/ leedk117@korea.kr

/ 비공개(5)